

# 「용현·학익1블록 시티오씨엘 4단지」 기관추천 특별 공급 관련 안내문

- ※ 「인천광역시 용현학익1블록 시티오씨엘 4단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청약 접수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청약통장가입 기간 6개월 이상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제외)
-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 부적격 당첨자는 해당 기관의 추천 여부,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접수 및 동호수 배정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청약 미접수시 당첨자선정 및 계약 불가)
-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특별공급 대상자(예비추천 포함)에게 특별공급 청약접수 관련하여 별도의 안내를 하지 않으며, 선정된 특별공급 대상자가 청약 접수안내를 받지 못하여 청약 미접수로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신청자가 동 안내문의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를 충분히 안내, 재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당 사업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용현학익1블록 시티오씨엘 4단지 홈페이지(www.cityociel4.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당 사업지는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사이버 견본주택 내 VR, 안내동영상, 마감재 리스트들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32-831-1141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해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사전예약 신청자에 한해 견본주택 청약 접수가 가능하오니 필히 청약일 전 ☎032-831-1141로 예약하시고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 ※ 20.02.28.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호(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500%,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게 되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 공급개요 및 일정

- 위 치 : 인천광역시 용현학익1블록 업무복합2BL 시티오씨엘 4단지
- 공급규모 : 지하3층 ~ 지상47층, 5개동, 총 764세대 (아파트 428세대 / 오피스텔 336실) 및 부대복리시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전용 85㎡이하 주택건설량 10%범위) (단위 : ㎡, 세대)

구분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세대별 계약면적(㎡)				계약 면적	배정 세대수(예비)	입주 예정 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민영 주택	74	74.9500	30.5288	105.4788	53.3623	158.8411	10(30)	'25년 01월 (예정)
	84	84.8700	33.4165	118.2865	60.4252	178.7117	25(75)	

- ※ 배정세대에 대한 추천 및 예비 추천 배정세대수에 맞게 대상자를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수치는 예비입주자 배정세대로 300%(소수점 절상) 적용하였습니다.
- ※ 상기 주택공급면적 및 세대 배정은 인천광역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입주예정월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유형별 배정세대 내역

(단위 : 세대)

구분		74	84	계	
기관 추천 특별 공급	장애인	인천시	1(3)	4(12)	5(15)
		경기도	1(3)	2(6)	3(9)
		서울시	1(3)	2(6)	3(9)
	국가보훈대상자		2(6)	5(15)	7(21)
	10년이상장기복무군인		1(3)	2(6)	3(9)
	장기복무제대군인		1(3)	2(6)	3(9)
	중소기업근로자		3(9)	8(24)	11(33)
	소계		10(30)	25(75)	35(105)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에 따라 주택형별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 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분양일정

구분	일자	참고사항
입주자 모집공고(예정)	<b>2021.09.09.(목) 예정</b>	일간신문 및 시티오씨엘 4단지 홈페이지 (www.cityociel4.com)
건본주택 개관(예정)	<b>2021.09.10.(금)</b>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임대로 287번길 7 건본주택(모델하우스 주소) ※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사이버 건본주택으로 운영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접수일시(예정)	<b>2021.09.27.(월)</b>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건본주택 청약 가능(사전예약 필수)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예정)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b>2021.10.07.(목)</b>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상기일정은 업무추진 중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건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10:00~14:00 / 공인인증서 및 자격검증서류 필히 지참, 은행창구 접수 불가)

II

특별공급 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9.09.(목) 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등에 따라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함. 단, 중소기업근로자 및 군인의 경우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제외)

- 청약예금 : 전용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전용면적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인천광역시 및 광역시	서울특별시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
85㎡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 ■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정의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호의3, 제2조의4에 따라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55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과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다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우선공급을 받은 자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특별공급은 한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

### ■ 행정사항

- 주택소유여부 등 청약적격여부는 당첨자발표 이후 견본주택에서 확인가능 하며, 확인 결과 위의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가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의 신청여부, 동호수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합니다.  
(신청자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명단으로 관리되며 평생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박탈당함)
-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을 신청자 본인이 책임지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세대주 및 주택소유여부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청약홈(청약자격확인-주택소유확인) 등으로 확인 가능하므로 추천시 재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 및 계약불가]
- 당첨자(예비자 포함)을 선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따라 해당기관장의 선정 순위에 따라 선정하게 되어 있으나, 청약 기본자격요건(무주택세대구성원)에 결격 사유가 있을 시 향후 부적격 및 계약취소가 될 수 있으니 당첨자 선정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II

### 당첨자 선정 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신청이 원칙이며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부동산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IV

## 유의사항

- 주택청약 업무가 금융결제원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되면서,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co.kr)로 변경되었으니 청약접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모집공고일 전 해당기관에 먼저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시 둘 다 무효처리(당첨시 모두 부적격)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되는 제출서류가 허위서류로 판명될 경우 청약 당첨 후에 계약을 하여도 계약 취소 사유가 되며,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주택형의 동호수 배정은 특별공급 · 일반공급 구분없이 전산관리지정 기관(한국부동산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불가)
- 공급금액, 전매제한기간, 재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2021.09.09.(목) 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형별 세부사항 등은 견본주택(032-831-1141), 팜플렛 및 홈페이지(www.cityociel4.com)를 통하여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09.09.(목) 예정)**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아닌 자는 접수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 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적격대상자 명단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릅니다.

관련문의 : 032-831-1141

